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48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 강민국·김상훈·이헌승

윤한홍 · 강명구 · 권성동

김소희 • 박상웅 • 박덕흠

조승환 · 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온라인 유통은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 일상 속에서 빠르게 보편화되었음. 이 과정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 거래는 온라인 유통시장을 대표하는 거래방식으로 자리 매김하였음.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급성장해온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노정하였음. 이 사태로 인한 미정산 대금이 총 1.3조 원에 달하고, 피해업체가 4만 8천여 개 사에 이르는 등 온라인 입점 사업자들의 취약한 지위가 드러났지만,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등 전통적 소매거래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입점 사업자

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 정의 규정 등에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추가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 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이 법상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2조의2).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에게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거나 청약접수의 지원을 하는 자 중 중개거래 수익(중개 거래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진 국내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 나 중개거래 금액(통신판매서비스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국내 총판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 자로 의제함.
 - 2)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안 제8조), 상품판매대금 등의 보호(안 제8조 의2), 그 밖의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과 관련한 의무(안 제5

- 조, 제6조, 제6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규정을 적용함.
- 다.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을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를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및 온라인 입점사업자가"로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 입점사업자"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재화·용역 또는 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을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로 하며, 같은 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장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 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9 조까지 규정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온라인 입점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거나 청약접수의 지원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다만, 제2장의적용에 있어서는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한정하여 적용한다.
-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제공한 통신판매중개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 배송지원, 고객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수료의 총합(이하 "중개수수료등"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진국내 총매출액(이하 "통신판매중개거래매출액"이라 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국내 총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제공한 통 신판매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등의 국내 총판 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국내 총판매금액을 1 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을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또는 온라인 입점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의2"를 "제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재화등의 통신판매중개거래에 있어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에게 계약을 통하여 판매대금 관리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용역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을 온라인입점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장래에 공급일이 특정되어 있는 용역(용역을 이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통신판매중개거래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용역의 이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 2. 대규모유통업자 및 해당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판매대금 관리를 위탁받은 자(「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이 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 기한 직전 3영업일까지 판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 (상품판매대금 등의 보호)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재화등의 통신판매중개거래에 있어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 1. 관리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판매대금 예치만을 위해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

리되는 판매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온라인 입점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입점사업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관리기관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판매대금을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온라인 입점사업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 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⑥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판매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판매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3. 온라인 입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통해 통신판매를 하는 조건 (중개수수료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제32조 중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로, "임대료를"을 "임대료 또는 통신판매중개거래매출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료"를 "임대료 또는 통신판매중개거래매출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금정산 기한에 관한 특례) 대규모유통업자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에게 계약을 통하여 판매대금 관리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해당 호에 따른 일자로 본다.
 - 1. 시행일로부터 1년 미만 경과 : 제8조 제3항 본문의 '20일'은 '40 일'
 - 2.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 : 제8조 제3항 본문의 '20

일'은 '30일'

제3조(상품판매대금의 등의 보호에 관한 특례) 대규모유통업자가 제8 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8 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 간 동안에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게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유통	제1조(목적)
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	
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u>납품</u>	<u>납품</u>
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업자, 매장임차인 및 온라인 입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	<u> 점사업자가</u>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	
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온라인 입점사업자"란 대규
	모유통업자에게 재화・용역
	또는 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
	을 수 있는 권리(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통신판매중
	개를 의뢰한 사업자를 말한다.
<u>4</u> . ~ <u>10</u> . (생 략)	<u>5</u> . ~ <u>11</u> . (현행 제4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	<u> </u>
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	
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	
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단서 신설>

1.·2. (생략) <u><신설></u>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u>다만, 제2장의 적용</u>
에 있어서는 제5조, 제6조, 제6
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
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
5조의2,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의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
는 자로서 온라인 입점사업자와
의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
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
약을 받거나 청약 접수의 지원 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의 적용에 있어서 "대규모유통
업자"로 본다. 다만, 제2장의 적
용에 있어서는 제5조, 제6조, 제

6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11 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 내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제 공한 통신판매중개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 제, 배송, 배송지원, 고객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수 료의 총합(이하 "중개수수료 등"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진 국내 총매출액(이하 "통신판 매중개거래매출액"이라 한다) 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국내 총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 다.
- 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 내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제 공한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국내 총판매금액이 1천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대규모유통업자가 <u>납품업자</u> 또는 <u>매장임차인</u>(이하 "납품 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 2. 제2조의2에 따라 대규모유통 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다수의 매장임 차인 중 일부 매장임차인으로 부터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 간의 거래

② (생 략)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저 ①·② (생 략)

<신 설>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국내 총판매금액을 12
	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조(적용제외) ①
_	
_	
1.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또는 온라인 입점
	<u>사업자</u>
2.	제2조의2제1항
2) (현행과 같음)
18	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1)・② (현행과 같음)
<u>3</u>) 대규모유통업자는 재화등의

억원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거래에 있어 판매 대금을 받<u>아 관리하는 경우</u>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 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 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에 게 계약을 통하여 판매대금 관 리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1 항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 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 텐츠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판매 대금을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 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 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이내 에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전자 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장래에 공급일이 특정되어 있는 용역(용역을 이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통신판매중개거래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용역의 이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 2. 대규모유통업자 및 해당 대 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판매대금 관리를 위탁받은 자(「전자금융거래법」 제 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 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이 항 본 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기한 직전 3영업일까지 판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판매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

<u>4</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 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u>⑤</u>
<u>제4항</u>
<u>.</u>

제8조의2 (상품판매대금 등의 보호)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재화등의 통신판매중개거래에 있어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 1. 관리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판매대금 예치만을 위해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 는 계좌에 예치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되는 판매대금을 상계하거 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 지 못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

항에 따라 별도관리되는 판매대

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

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

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온라인 입점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온라인 입점사업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기관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 략)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우선 지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유 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판매대금을 다른 관 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온라인 입점사업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반을 권리가 있다.

⑥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판매대 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판매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	----	-----

(1)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 3. 그 밖에 납품업자등이나 납품업자등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 ② ~ ④ (생 략)
-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 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 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 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 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

3. 온라인 입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통해 통신판매를 하
는 조건(중개수수료등을 포함
한다)에 관한 정보
<u>4</u>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u>정</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시정명령)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 제35조(과징금) ① ------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 --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 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 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 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 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 임대료 또는 통신판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 매중개거래매출액을 -----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징금은 위반행위 를 규정한 조문별로 산정하되, 그 합계가 제1항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 <u>임대</u>료 또는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2 배를 초과할 수 없다. 통신판매중개거래매출액----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